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4. 26 선고 2023가합10334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1. A 주식회사

2. B 주식회사

3. 주식회사 C

4. 주식회사 D

5. E 주식회사

6. F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

담당변호사 성창재

피 고 G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

담당변호사 홍승규

변 론 종 결 2024. 4. 5.

판 결 선 고 2024. 4. 26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식회사 H[법인등록번호 I, 대표이사 J]과 피고 사이에 2022. 3. 2. 체결된 채권(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2438 사건의 소송물인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채권 일체)양도계약을 1,658,542,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주식회사 H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, 별지 채무자 목록 기재 각 채무자들에게 양도통지 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들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채권

- 1) 원고 A 주식회사(이하 주식회사는 ‘주식회사’ 기재를 생략한다)는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1561호로 2021. 6.경부터 2021. 8.경까지 H의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였다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, 그 소송에서 2022. 8. 26. H이 원고 A에 1억 6,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22. 9. 17. 확정되었다.
- 2) 원고 B은 H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가합5164호로 H이 연대보증한 대해건설의 원고 B에 대한 임차료 등 채무의 지급을 청구하였고, 2023. 2. 9. 위 법원으로부터 ‘H은 원고 B에게 332,056,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6. 30.부터 2022. 11. 16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그 판결이 2023. 3. 4. 확정되었다.
- 3) 원고 C은 H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가합10660호로 경상남도로부터 ‘K공사’를 공동으로 수급받았다가 H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원가분담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, 2022. 6. 9. 위 법원으로부터 ‘H은 원고 C에게 232,532,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1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그 판결이

2022. 6. 30. 확정되었다.

4) 원고 D는 H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9389호로 H에게 도급한 리조트 신축공사의 준공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, 2022. 7. 22. 위 법원으로부터 ‘H은 원고 D에게 417,3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8. 5.부터 2022. 7. 22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그 판결이 2022. 8. 17. 확정되었다.

5) 원고 E은 H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25183호로 H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, 2022. 1. 25. 위 법원으로부터 ‘H은 원고 E에게 119,805,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6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그 판결이 2022. 2. 22. 확정되었다.

6) 원고 F은 H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07597호로 2021. 3.경부터 H의 공사현장에 싱크대를 납품하였다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, 2022. 5. 25. 위 법원으로부터 ‘H은 J과 연대하여 원고 F에게 182,09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8. 11.부터 2022. 1. 21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그 판결이 2022. 6. 22. 확정되었다.

나. H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

1) H은 2021. 7. 12. L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위 조합의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일체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위 재건축정비사업이 이행불능상태에 빠짐에 따라 2022. 2. 16. 위 조합 등을 상대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(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2438호, 이하 ‘관련 사건’이라고 한다), 소송 계속중이던 2022. 3. 2. 피고에게 ‘소송과 관련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채권 일체’를 양도하였고(이하 ‘이 사건 양도계약’이라고 한다), 그에 따라 피고가 2022. 7. 22. H의 승계인으로 위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.

2) 그런데 H은 2023. 6. 27. 피고에게 ‘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서에는 H의 법인인감이 아닌 H

안산지사에서 사용하는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고, 양도계약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며, 양도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채권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통지하였다. 이에 피고는 2023. 11.경 승계참가신청을 취하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양도계약이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거나 무권대리에 의한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,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①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닌바(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50985 판결 참조), 설령 이 사건 양도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, H의 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외형상 일탈된 H의 책임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실익이 있는 점, ②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취소하고자 하는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그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소송은 그 목적이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할 것이나(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), 피고가 관련 사건에서 승계참가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일탈된 H의 책임재산이 이미 복귀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(특히, 피고는 관련 사건에서 제출한 승계참가신청 취하서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고 이와 다르게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H의 주장에 납득할 수 없으나, 위 H의 입장에 따라 승계참가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) 등을 고려하면,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,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여부

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켜야 하나(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), 채무자인 H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H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, 즉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거나 심화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, 이를 이유로 한 위 양도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정인, 판사 이진희, 판사 박창현

별지